의 안 번 호		제	ই
의	결	2023.	
연 월	일 일	(제	회)

의 결사항

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 운영위원 정수 및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조합원 대표성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,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합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
- 나. 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9명 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9명"을 각각 "1 4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운영위원회) ① (생 략)	제51조(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
	같음)
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	2
위원으로 구성하되, 조합원인	
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	
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	
1.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	1
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	
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・무기	
명투표로 선출하는 <u>9명</u> 이하	<u>14명</u>
의 위원	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4.•5. 삭 제	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	6
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	
관이 위촉하는 <u>9명</u> 이하의 위	<u>14명</u>
원	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

연 락 처

(044) 201 - 3512